

# 순천대학교 조교규정

제정 1998. 11. 20.  
개정 2000. 2. 29.  
개정 2013. 2. 15.  
개정 2014. 12. 24.  
개정 2019. 10. 4.  
전부개정 2020. 10. 2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의 조교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①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의 조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.

③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단과대학장 또는 부서장의 요청으로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되, 학과·학부(이하 '학과'라 한다)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한 평가·인증을 실시하는 학과에 한한다.

**제3조(임무)** 조교는 이 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.

**제4조(임용기간)**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임용기간이 학기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.

**제5조(신규임용)** ① 조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공개채용은 학과장 또는 부서장이 주관하고, 그 절차나 세부사항은 학과장 또는 부서장이 정하여 실시한다.

③ 총장은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.

**제6조(재임용)** ① 조교의 재임용 횟수는 2회로 한다. 다만, 학과 이외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5회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

② 제1항의 재임용 횟수가 만료된 조교는 신규임용의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하며,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.

**제7조(근무성적평정)** ① 조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 말,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다.

②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2회 연속 만점의 80% 미만인 조교는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1998. 11. 2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 2. 2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2. 15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12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10. 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0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